

## 2. 住宅分讓價原價連動制中 地下駐車場 設置費用 認定

建設部 住政 第58500-1668號, 93. 9. 11

1. 주정 30417-25926('89. 11. 7) 및 주정 58500-156('93. 2. 6)의 관련입니다.

2. 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함에 있어 분양 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지하층이나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동안은 건축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의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해주는 경우 분양가에 반영하도록 하여 왔습니다.

3. 최근 주차장설치기준이 강화되어 대부 분의 아파트단지에서 지하주차장을 설치하고 있으나 지역별로 비용인정기준

이 상이하여, 이를 통일해야한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4. 따라서 다음과 같이 건설부 신도시기획실에서 제정하여 운용중인 기준을 제시하니 지역적 특수성등으로 인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 기준에 따라 관련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용 25.7평이하 : 평당 96만원  
전용 25.7평초과 : 평당 101만원